
2019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

2020. 02. 07

목차

I. 들어가며

II. 2019 동물학대 사건 현황

1. 2019 전국 동물학대 사건 현황과 특징

2. 2019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사건 현황과 특징

III. 2019 주요 동물학대 사건과 특징

IV. 동물학대 사건 대응의 한계와 과제

[별첨] 2019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관련 주요 활동

2019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

I. 들어가며

한국 사회는 바야흐로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았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국민 생활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최근 정부는 202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반려동물을 조사 항목에 추가하는 계획을 발표하여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도 했다. 동물은 이제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는 ‘애완’에서 인생의 동반자인 ‘반려’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사회 전반적인 생명 감수성 향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는 동물 유기와 동물학대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기도 하였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인구에 비례하여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동물학대 또한 증가하는 현상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다. 동물을 향한 물리적, 정신적 학대는 그 양상이 더욱 잔혹해지고 있으며 동물학대를 사람들의 주목을 이끄는 소재로 삼아 돈벌이에 이용하는 새로운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물학대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동물학대 범죄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수백 건의 국민 청원과 여러 언론을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동물보호법 제정 30년 만에 동물학대 범죄에 연이어 실형이 선고되고 있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동물학대 범죄를 단순 재물 손괴가 아닌 생명 경시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동물학대 범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여전히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행법(민법 제98조)은 동물에게 ‘재물’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동물은 마치 물건처럼 누구든지 쉽게 사고 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또한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학대에 대한 실제 처벌은 대부분 몇 백만원의 벌금형에 그치고 만다.

동물자유연대는 매년 수많은 학대 제보에 대응하고 피학대 동물의 구조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관련 입법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동물자유연대가 대응한 동물학대 사건을 통해 한 해 동물학대 범죄의 주요 흐름 및 특징을 분석했다. 또한 동물학대 대응 사례를 통해 동물학대 범죄의 예방, 대응, 처벌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한계를 들여다보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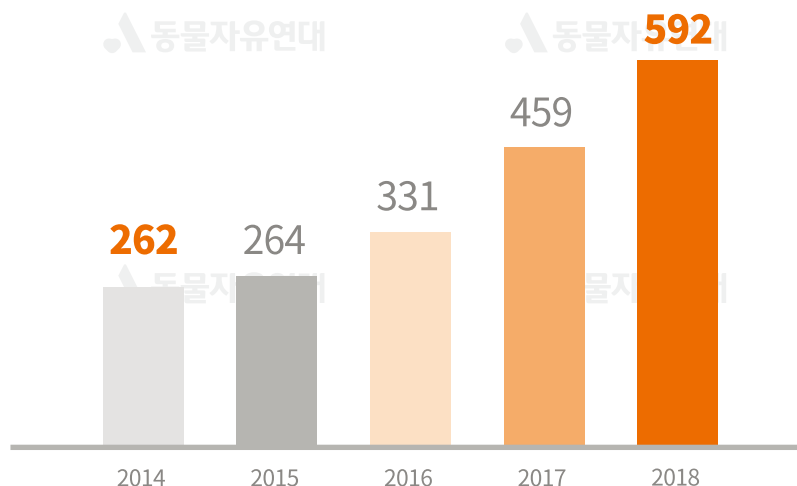
II. 2019년 동물학대 사건 현황

1. 2019년 전국 동물학대 사건 현황과 특징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는 확인할 수 없다. 동물자유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19년도 동물학대 범죄 건수 확인을 요청했으나 경찰청은 정보가 없다고 응답했다. 경찰청에서 매년 작성하고 있는 범죄통계에도 동물학대가 따로 분류되고 있지 않아 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략적인 동물학대 사건의 증가 추이는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통해 확인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송치된 인원은 총 1,908명이었다. 2014년 262명에 불과했던 인원이 2017년에는 459명, 2018년에는 592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 5년 간 무려 2.2배가 증가했다. 기소 송치되지는 않았지만 경찰로 접수된 동물학대 사건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보호법 위반 기소 송치 인원



[그림1] 최근 5년 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 된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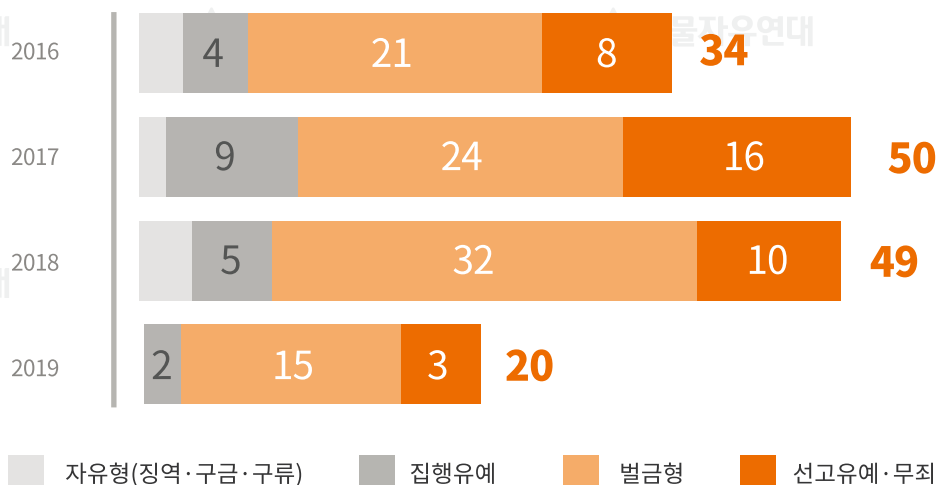
통계자료 외에도 동물학대 사건의 증가는 국민청원 및 주요 언론이 다루는 뉴스를 통해서도 체감할 수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동물학대 강력 처벌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약 400여건 접수되었고 많은 언론이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을 주요하게 보도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생명감수성이 증진되고 많은 국민들이 동물학대를 주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인원은 증가하였으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대표 혐의로 1심에서 선고 받은 사람은 84명이었다. 이 중 1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1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의 69명이 1심 선고를 받았으나 이 중 실형을 선고 받은 이는 2명에 불과하다.

동물학대 범죄는 현행 동물보호법 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학대범죄는 경범죄 혹은 재물 손괴 행위에 불과한 가벼운 범죄로 여겨져 무혐의나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동물보호법 위반 1심 판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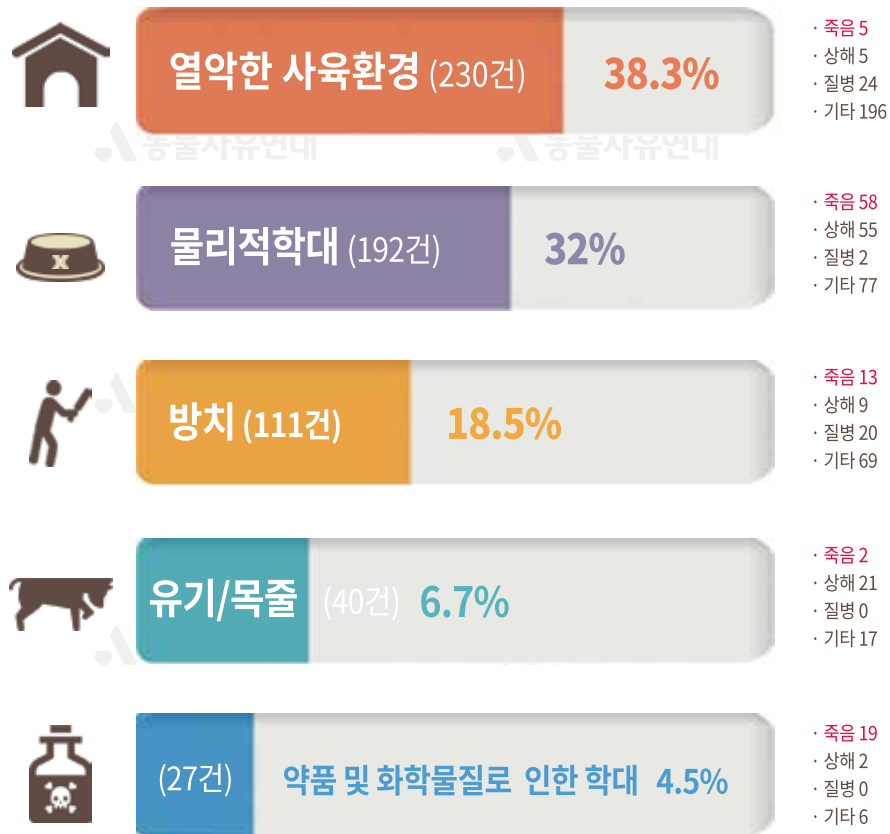
자료:법무부



[그림2] 동물보호법 위반 1심 판결 현황

2. 2019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사건 대응 현황과 특징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 한 해 동안 4,235건의 제보를 받았고 그 중 동물학대 사건은 약 600건에 달했다. 세부적인 학대 유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3] 2019년 동물자유연대로 제보된 동물학대 유형 통계

동물자유연대로 제보된 동물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동물학대 사건 600건 중 열악한 사육환경에 관한 제보가 230건을 차지했다. 2018년 9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¹에 따라¹ 혹서, 혹한기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개농장의 개 및 외부에서 사육되는

¹ 반려동물 사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육공간, 급이와 급수 제공, 치료 제공하지 않아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킬 경우, 동물보호법 제 8 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따라 처벌

동물에 관한 학대제보도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을 가늠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열악함의 정도가 상이하여 동물이 상해나 질병 혹은 죽음에 이르지 않은 경우 동물학대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동물학대 유형 외, 동물을 대상으로 수간을 하거나 성적학대를 일삼는 등의 학대사건도 제보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국내 동물보호법은 행위로 인한 상해나 질병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간이나 성적학대는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현행 동물보호법은 일부 학대 유형을 동물학대 행위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와 같이 외관상 상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없다.

III. 2019년 주요 동물학대 사건과 특징

동물자유연대는 2001년 창립 이래 수많은 동물학대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지자체 동물보호담당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진행하고 주요 학대사건의 학대자를 고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원과 시민 서명을 통해 학대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9년 동물자유연대가 대응한 주요 동물학대 사건의 개요와 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이를 통해 한 해 동물학대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건명	일시	사건내용	결과
충남 아산 살견마 사건	2019. 04	주민들의 보호를 받는 떠돌이 개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다 어미견이 보는 앞에서 차로 쳐 살해함	벌금500만원
화성 고양이 연쇄살해사건	2019. 07	여러 차례에 걸쳐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폭행하고 살해하고 하천에 길고양이 사체를 유기함	징역 4개월 법정구속
아산 길고양이 학대사건	2019. 07	학교 내에서 돌봄 받던 길고양이를 교내 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쇠파이프로 가격하는 등 잔혹하게 학대함	벌금 100만원 정직 3개월
블레니 사건	2019. 07	식용을 목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살아있는 개를 토치로 그을림	벌금 100만원
목동 길고양이 토막살해사건	2019. 07	목동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길고양이의 토막살해가 발견됨	범인을 특정하지 못함

유튜버 반려견 학대사건	2019. 07	한 유튜버가 방송 중 자신의 반려견을 폭행하고 침대에 내던지는 등 학대함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
부산 해운대 길고양이 살해사건	2019. 08	지속적으로 길고양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살해하고, 지속적으로 밥그릇에 약을 넣은 정황이 확인됨	벌금 300만원 피의자가 정식재판 청구
파주 길고양이 학대사건	2019. 09	털발을 망친다는 이유로 샅으로 고양이를 내려침	벌금 30만원
유튜버 반려묘 학대사건	2019. 10	개인방송 중 반려묘 두 마리를 학대함	판결 진행 중
선릉역 모텔 고양이 추락사건	2019.10	모텔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몰다가 7층에서 고양이를 추락하게 함	무혐의 판결(증거불충분)
초등생 유튜버 길고양이 살해사건	2019.11	본인의 개인채널에 장기가 튀어나온 고양이 사체의 사진과 '심심해서 돌로 쳐봤다'는 자막을 삽입한 영상을 게시함	수사 진행 중
커뮤니티 길고양이 토막살해사건	2019.11	고양이를 토막살해 한 후 사체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며 인증함	수사 진행 중

[표1] 2019 동물자유연대 고발 주요 동물학대 사건 개요

1. 개인방송 돈벌이 수단이 된 동물학대

몇 년 전부터 아프리카 TV 나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서비스를 통한 개인방송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조회수와 구독자 수 증가가 돈이 되는 구조이며 이러한 구조는 개인방송 운영자가 보다 자극적인 소재를 찾게 만들어 동물학대가 그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7월 동물자유연대는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한 유튜버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해당 유튜버가 온갖 욕설과 함께 반려견을 침대에 패대기 치며 구타하는 모습은 고스란히 방송을 탔으며 “백 날 고발해봐라, 벌금 내면 그만이다”, “내 개를 내가 때리는데 뭐가 문제냐”는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해당 유튜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개인방송 단속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에 달하기도 했다.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해당 유튜버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재판 참석 당일 ‘재판 다녀온 후기’와 같은 제목으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송을 이어나갔다. 재판 조차 개인방송의 콘텐츠로 이용하는 행태가 이어졌고, 재판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다른 유튜버의 경우, 개인방송 중 수차례 자신의 반려묘를 학대하여 충격을 주었다.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아들어 배와 엉덩이 부분을 강하게 내리치고 수간에 버금가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유튜버를 즉각 고발조치 하였으며 피학대 동물은 타동물단체가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유튜버는 “내 잘못을 인정하지만 내 고양이를 뺏어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성과 뉘우침보다는 소유물을 빼앗겼다는 억울한 반응 뿐이었다.



[사진 1] 개인방송 중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한 유튜브

이외에도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진을 개인채널에 게시하거나 동물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에 내보내는 등 여럿 개인 방송인들이 동물을 이용한 자극적 콘텐츠로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한 동물학대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학대자의 신원확인이 쉽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개인 방송의 대표 채널인 유튜브 (구글코리아)의 정책 상 유튜브 내에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해당 영상은 삭제되고 채널은 경고 또는 해지된다. 그러나 동물학대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2019년 7월, 구글 코리아 측에 동물학대 콘텐츠 채널의 삭제와 제재 마련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도 구글코리아는 동물자유연대의 공문에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유튜브라는 최대 규모의 동영상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구글 코리아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동물학대 콘텐츠 제재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2. 동물학대 범죄의 표적이 된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보호자 없이 살아가는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는 반려동물에 비해 접근이 수월하여 손 쉬운 학대의 표적이 되지만 갑자기 사라져도 행방을 알 길이 없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드물며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마땅한 보호자나 소유자가 없으므로 적극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들로 길고양이와 유기동물의 학대는 그 잔혹성에 비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수준이다.

충남 아산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돌보던 개가 차에 짓밟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떠돌이 개 누렁이는 마을에 자리를 잡고 3년간 주민들의 관심과 보호 속에 살아왔다. 그러나 한 주민은 누렁이와 누렁이의 새끼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하였고 결국 자동차 바퀴로 새끼를 깔아 뭉개 죽였다.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자를 고발하는 동시에 적극적 수사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명 활동을 진행하였다. 3만 3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지만 해당 사건은 벌금형 처분에 그쳤다.

또한 2019년에는 길고양이 대상의 학대 사건이 빈발했으며, 그 방식 또한 잔혹했다. 길고양이는 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람과의 넓은 접점으로 인해 손쉬운 학대의 대상이 되곤 하며, 최근 혐오범죄로의²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사건과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사건, 고양이 토막살해사건 등 대다수의 길고양이 학대사건은 가해자의 순간적 감정이 학대행위의 원인이 되었다. ‘우발적이었다’ ‘순간 기분이 나빴다’ ‘고양이가 싫다’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길고양이 학대사건은 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² 이정념(2015)은 혐오범죄에 대해 피해자 내지 피해집단이 속한 인종, 언어, 종교 등과 같은 특수한 소인에 대한 범죄자의 편견성향에 따라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혐오범죄의 이유를 인간이 속한 집단에 대한 편견성향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를 인간과 동물의 관계로 확장한다면 길고양이라는 특수한 대상에 대한 편견성향에 따라 발생하는 학대사건 역시 혐오범죄의 양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동물학대 범죄으로는 이례적으로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범에게 1심 실형 6개월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는 실형 1년 6개월이 구형,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범에게도 징역 4개월 법정구속이라는 형량이 내려졌다. 그러나 부산 길고양이 살해 사건의 경우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에 그쳤다. 길고양이 학대라는 유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상이한 판결이 내려지는 이유는 피학대 동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 여부에 있었다. 길고양이라 하더라도 소유에 준하는 돌봄을 제공한 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재물손괴에 대한 혐의를 묻는 경우, 대체적으로 높은 형량이 부과된다. 이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학대로 인한 동물의 고통보다는 피학대동물에 대한 소유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장하는지가 판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전히 법은 동물을 생명이 아닌 재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길고양이 상해와 관련하여 재물손괴 죄가 병합되면 학대자 형량이 무거워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재물손괴 처벌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어렵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에게 그 소유권을 인정할 경우 길고양이에 의한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법적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재물손괴의 본질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그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하는 데에 있다. 즉 동물을 물건과 같은 재산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동물보호법에 의한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사진 2] 뒷발을 망친다는 이유로 삼으로 학대 당한 어린고양이

3. 개식용 산업 붕괴에도 끊이지 않는 개도살의 악몽

2018년 12월 성남 모란시장, 태평동 개도살장 철거에 이어, 2019년 7월 전국 3대 개시장 중 하나인 부산 구포 개시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전국 주요 개시장 및 개도살장의 연이은 철폐는 우리나라 개식용 산업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2월 오랜 기간 법정 공방을 이어왔던 ‘인천 전기 개도살 파기 환송심’에 대해 최종 유죄판결이 내려지며 전기 개도살이 사회통념상 잔인한 방법으로 인정되었다. 이는 전기개도살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인정한 것으로 동물보호운동의 전환점을 마련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식용 종식과 개식용 산업 붕괴를 위한 역사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매 여름 그렇듯 2019년 복날에도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

복날을 하루 앞두고 공장 마당을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을 산 채로 유리병으로 찢은 뒤 토치로 그을려 상해를 입힌 사건에 많은 이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블레니’라는 이름을 얻은 개는 즉시 구조되어 한달 여 간의 입원과 치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심각한 전신 화상과 높은 염증 수치로 생사를 넘나들던 블레니는 안타깝게도 결국 쇼크사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판결은 구약식 처분을 통한 벌금100만원 형에 그쳤다.



[사진3] 고된 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별이 된 블레니

7월경에는 통영의 한 농장에서 몽둥이로 개를 때려잡는다는 제보를 접하고 학대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개들을 구조했다. 제보에 의하면 해당 농장주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인 채 끌고 다녔고 개의 울부짖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는 와중에도 개도살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현장에는 50여마리의 개들이 뜰장에 갇혀 있었고 개식용을 위한 숯, 도살 도구들이 갖춰져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뜰장의 개들을 구조하고 도살장 철거를 확인했다.

동물자유연대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 진행한 ‘개식용 산업 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71.9%가 향후 개고기 섭취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국민이 개식용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 예상했으며 개식용 산업 종식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이러한 지표는 우리 사회의 악습으로 남아있던 개식용 산업의 종식이 머지 않아 다가올 미래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4. 동물과 인간 모두를 위협하는 애니멀 호딩

자신의 사육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많은 수의 동물을 수집 하듯 사육하는 '애니멀 호딩'이 증가하고 있다. 애니멀 호딩은 반려목적을 넘어서 단순히 동물을 '수집'하는 것에 집착하는 일종의 강박증상으로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동물을 양육하여 열악한 환경에 방임하는 학대행위이다. 애니멀호더는 이성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 주거환경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수행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동물들을 배설물과 쓰레기 속에서 생활하게 하며 과밀집 환경 속 동물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나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물며 동물들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게 된다.

동물자유연대는 2017년 열악한 환경에서 고양이 19마리를 키우던 애니멀 호더 가족으로부터 동물을 구조 및 치료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호더의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알선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애니멀 호더의 집을 찾아 개체 수 증식을 막기 위한 반려동물 중성화수술을 지원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개들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다른 가정으로 일부 입양을 보냈다. 동물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위생적인 환경에서 개들을 양육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지원했다. 지원 이후 다시 동물을 수집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다.

애니멀 호딩 문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해왔고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학대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애니멀 호딩은 동물학대 문제 뿐 아니라 사회복지적 차원의 개입이 수반되어야 하는 복합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애니멀 호더가 동물을 강박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동물을 수집하는 행위의 원인을 대개 사회와의 단절, 경제적 결핍 등에서 기인한 우울감, 무력감, 강박 등에 있다고 본다. 그 결과 애니멀 호딩에 대한 문제는 동물복지 저해뿐만 아니라 호더의 어려운 경제상황, 이웃과 가족간의 갈등, 정신건강 위협 등 다방면에 걸쳐 나타난다.

따라서 애니멀 호딩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복지까지 저해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는 애니멀 호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 내 사회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교육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지원과 적절한 개입방안을 마련해야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진4] 반지하방에서 개 30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애니멀 호더의 집

5. 증가하는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범죄

최근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범죄의 증가뿐 아니라 학대 행위의 잔인함도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해 동물자유연대로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동물학대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는 초, 중, 고등학생으로 다양했으며 다른 동물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는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많았다.

19 년 12 월에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업로드된 중학생이 고양이를 토막 살해한 사진과 함께 “정말 짜릿했다”며 자랑하는 게시글을 올려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해당 중학생은 범행 이전 ‘길고양이를 잡는 법’, ‘망치 구입처’ 등을 묻거나 새끼고양이들을 학대한 뒤 부모에게 자랑했다는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중학생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이 새끼 고양이를 주먹으로 내리친 후 바닥에 내동댕이 친 사건과 길고양이를 살해했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양이 사체를 찍은 영상을 올린 사건도 있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범죄는 발견과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동물학대는 ‘어릴 적 으레 그럴 수 있는 일’로 치부되어 적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 연령으로 인해 처벌이 어렵다.³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 차 피해 우려도 고려해야한다. 해당 사건이 피의자의 학교나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되면 신원이 노출될 수도 있고 조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장기적인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라나는 청소년기에 평생 동안 따라다닐 사회적인 낙인이 부여될 우려도 피할 수 없다.

³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뉘어 10 세 이상 13 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14 세 이상 18 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긴 하나 소년법 특례를 받아 완화된 형을 선고 받음

따라서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고려함과 동시에 공교육 제도 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 마련 등 아동·청소년의 동물학대 범죄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5] 아동·청소년 동물학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IV. 동물학대 사건 대응의 한계와 과제

동물자유연대는 하루에도 수십 건에 달하는 동물학대 제보를 받는다. 가능한 한 제보자가 직접 지자체 및 경찰에 요청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사안의 심각성과 피학대 동물의 피해정도에 따라 동물자유연대의 위기동물대응팀이 직접 현장으로 출동한다. 학대사건대응은 지자체와 수사기관과의 협력, 피학대 동물의 격리와 보호, 학대자에 대한 고발 및 처벌에까지 이르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사건대응 과정에서 효과적인 동물학대 대응을 가로막는 한계와 과제들을 마주했다.

1. 동물 = 물건, 학대자가 동물 키워도 못 막아

우리나라 현행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물의 법적 지위는 동물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다. 생명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동물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처럼 생산되고 판매된다. 돈만 있다면 누구든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동물은 생명이 아닌 쉽게 사서, 아무렇게나 대하고, 쉽게 버려도 되는 물건으로 취급된다.

‘누구나’ 동물을 쉽게 살 수 있는 동물분양시스템 속에서 동물 학대자도 그 ‘누구나’에 해당한다.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동물학대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언제든지 동물을 키울 수 있고 그 동물은 잠재적 피학대 동물이 된다. 실제 ‘화성 길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의 학대자는 길고양이 두 마리를 잔혹하게 죽이고 그 다음 날 바로 새끼고양이를 분양 받았다. 해당 고양이는 동물자유연대가 격리 및 보호조치 하였으나 학대자는 그 이후 새로운 고양이를 또 분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나 개들을 방치하여 네 마리의 개를 아사시킨 ‘성내동 개 아사 사건’ 또한 학대자가 새로운 동물을 분양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에 일어난 참사였다.

학대자 소유의 동물일지라도 직접적인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이 아니면 학대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없다는 점도 동물학대 범죄 대응의 커다란 한계 중 하나다. 해외의 경우, 피학대 동물의 격리 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대자 소유의 모든 동물에 대한 격리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해당 동물이 학대자의 추가적인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자 소유의 동물이라 할지라도 직접적 학대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학대자로부터 분리할 수 없어 남은 동물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학대 현장을 떠나야 한다.

동물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시작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사회의 법, 정책, 관련 산업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와 더불어 동물을 쉽게 소유할 수 없게 하며 동물을 학대한 사람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2. 동물학대 유형과 정의 변해야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동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한 상해,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정의는 다양해지는 동물학대 유형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동물학대 범죄 대응을 어렵게 한다.

동물학대 범죄 처벌에 있어서 학대로 인한 동물의 피해는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는데 국한되어 있다. 즉,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피학대 동물의 신체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손상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혹은 동물이 죽음에 이른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심한 물리적 학대를 받았을지라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손상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범죄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 수간과 같은 학대 행위로 인해 동물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나 트라우마는 학대로 인한 피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해 이천에서 발생한 개 수간 사건을 비롯하여 반려묘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간과 성적학대 사건이 여럿 발생하였으나 그에 대한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는 것이 국내 동물보호법의 현실이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음식섭취와 같은 기본적 욕구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동물일지라도, 신체적 상해 및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면 학대자를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동물자유연대로 접수된 학대제보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은 ‘방치’ 혹은 ‘열악한 사육환경’에 관한 제보이지만 대부분 처벌이 어려운 이유가 이 때문이다.

정부는 진화하는 동물학대 유형을 시기적절하게 반영하고 학대로 인한 동물의 고통을 보다 세분화해야만 동물학대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3. 동물학대 범죄에 미온적인 사법부와 수사기관

국내의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를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유기 행위를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대 징역 10년에서 최소 6개월의 징역형을 내리는 미국과 최고 형량을 5년으로 강화한 영국을 비롯하여, 스위스의 경우 동물학대 범죄에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외 주요 동물복지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국내 동물보호법도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형량을 비교적 높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문제는 법의 실효성이다. 실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극히 드물며 대부분의 동물학대 사건은 구약식 처분을 통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친다. 또한 동물학대사건 수사에 대해 대체적으로 미온적인 수사기관의 태도, 동물학대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와 인력이 존재하지 않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 차원의 통계가 부족한 점도 효과적인 동물학대 대응의 장애물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개 전기도살 대법원의 파기환송 및 유죄 판결과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사건 등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연이어 실형이 구형, 선고 되고 있어 그간 동물학대 범죄에 줄곧 미온적이었던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생명존중과 동물보호 가치를 바탕으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에 힘써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과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별첨] 2019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 관련 주요 활동

동물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더욱 잔혹한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감수성 부족이라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동물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정의하여 원한다면 언제든지 누구나 동물을 ‘구매’ 할 수 있는 시스템과 미흡한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범죄에 미온적인 사법부와 수사기관 또한 주요 원인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학대사건 대응사례를 바탕으로 동물학대 대응의 법적·제도적 한계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2019년에도 동물학대 사건에 직접 대응할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인지, 대응, 처벌에 이르는 정부차원의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학대자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 제안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모으는 활동을 펼쳤다.

1. 동물학대 대응포럼 출범과 학대 대응 메뉴얼 마련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응하면서 마주했던 다양한 한계와 과제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물학대 대응포럼을 출범시켰다.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지자체 동물보호담당관, 법조인, 수의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은 동물학대 범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부재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민의 경우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하더라도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지 못해 현장을 그냥 지나치거나 학대사건 해결의 중요한 증거를 놓치곤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나 공무원 또한 동물학대 범죄의 대응체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원활한 사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동물학대 대응포럼은 학대사건의 인지-모니터링-사건신고 및 처리-피학대 동물의 보호 등 동물학대 사건 대응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계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한 시민, 경찰, 공무원 등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동물학대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관련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 동물학대 대응 메뉴얼을 활용하여 시민, 경찰, 지자체

공무원이 동물학대 사건에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위기동물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더불어 동물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동물학대 근절 활동을 펼치는 시민감시단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진 7] 동물학대 대응포럼 정기 회의

2. 동물학대 양형기준안 마련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는 지난 해부터 올해에 걸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 중이다. 양형이란 죄에 해당하는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을 말하며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현재 살인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절도범죄, 강도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해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동물학대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없다.

양형기준이 부재한 경우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담당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개 앞서 유사한 사건에 내려진 판결을 따르거나 때에 따라 다르다.

과거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실형선고가 거의 전무했으나 최근 들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 구형이 이어지고 있어 실형 구형에 있어서의 양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법률지원센터와 함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마련을 제안한다. 학대자에 대한 실형선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학대 범죄 처벌에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안 마련에 이어 양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실제 동물학대 처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3.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입법화 및 시민인지제고 캠페인

동물자유연대가 고발한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은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 마련과 동물의 구조·보호의 범위 확대가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학대자는 고양이 두 마리를 살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 고양이를 분양 받았다. 그 고양이는 동물자유연대가 격리조치 하였으나 최근 학대자는 재판 중에 또 다시 새 고양이를 분양 받았다.

해외의 경우, 동물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동물을 분양 혹은 입양할 경우 입양자는 엄격한 심사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한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동물을 키울 수 있다. 동물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사람 또한 동물을 양육함에 있어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으며 직접적인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 외 학대자 소유의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국 일부 주는 동물학대사건이 발생하면 학대자의 동물 소유 및 양육의 권리를 일정기간 박탈하고 학대자 소유의 모든 동물을 격리 및 보호한다. 이러한 조치는 잠재적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

그 동안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수차례 발의 되었으나 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에도 동물의 구조·보호 범위를 피학대 동물을 포함한 학대자 소유의 모든 동물로 확대하고 학대자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입법 제안 활동을 이어나갔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20대 국회 회기 끝에

피학대 동물의 구조와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사건 대응 사례를 통해 해당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동물학대 강력처벌의 중요성과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필요성을 알렸다. 현재까지 2만 여명 이상의 시민이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입법에 지지했다.

동물보호법 제 20조의 2 동물의 소유권 제한 신설

-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학대받은 동물을 격리조치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은 해당 동물에 대한 반복적인 학대의 위험방지 등 피학대 동물의 생명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유권 제한 청구기간의 범위에서 학대행위자의 소유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제한을 선고할 수 있음.
- 학대행위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유로 동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음.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 보호, 18조의 동물의 반환

- 동물학대 등의 혐의로 신고 또는 조사중에 있는 경우 그 처리결과가 확정되는 기간, 피학대 동물의 생명, 안전 또는 복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20조의 2 동물의 소유권 제한(신설 조항)에 따라 소유권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야 함.

[표2]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 8] 동물학대자 소유권제한 입법화를 위한 오프라인 서명운동



발행처 동물자유연대
발행일 2020년 2월 7일

발행인 대표 조 희 경
작성자 사회변화팀장 채 일 택
사회변화팀원 박 선 화
사회변화팀원 김 민 경

주 소 서울 성동구 행당로17길 1-77
홈페이지 www.animals.or.kr
전 화 02-2292-6337
팩 스 02-2292-6338
이 메 일 admin@animals.or.kr